남양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(박윤옥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35 발의연월일 : 2024. 10. 10.

발 의 자 : 박윤옥, 이경숙, 한송연,

정현미, 이정애, 전혜연,

이수런, 이진환, 박경원,

김상수, 김현택, 손정자

1. 제안 이유

○ 고령화의 진행에 따라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 내용

- 목적, 기본이념, 용어의 정의(안 제1조~제3조)
- O 책무,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시행계획 수립 등(안 제4조~제6조)
- O 고렁친화도 평가 및 기초조사 등(안 제7조, 제8조)
- O 생활환경 편의 증진 및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(안 제9조, 제10조)
- O 사회활동 참여, 권익 보호 및 세대 간 이해증진(안 제11조, 제12조)
- O 홀로 사는 노인의 보호,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(안 제13조, 제14조)
- O 건강증진, 영양·건강사업 지원(안 제15조, 제16조)
- O 교육 및 홍보, 위탁에 관한 사항(안 제17조, 제18조)
- O 고령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에 관한 사항(안 제19조~제27조)

- 3. 제정조례안 : 덧붙임
- 4. 예산수반사항 : 덧붙임
- 5. 관계법령 발췌서 : 덧붙임

남양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남양주시의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건강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 구현과 삶의 질 향 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기본이념) ① 노인은 후손을 양육하고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분들로서 존경받고 건강하며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. ② 남양주시(이하 "시"라 한다)는 시에 거주하는 노인이 사회경제적·신체적 조건 때문에 차별받지 않고, 건강하고 활력있는 생활을 영위할수 있도록 보편적 노인복지 정책을 지향한다.
- 제3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- 1. "고령친화"란 편리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여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.
 - 2. "고령친화도시"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기반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.
- 제4조(책무) ① 남양주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.
 - ② 남양주시민(이하 "시민"이라 한다)은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

- 인식하고 시의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 야 한다.
- 제5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6조(시행계획 수립 등) ①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 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-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
 - 2.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과제 및 추진계획
 - 3.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제7조(고령친화도 평가 등) ①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고령친화 정도를 나타내는 고령친화도 평가를 할 수 있다.
 - ② 시장은 시 본청,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고령친화 수준을 점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고령친화도를 평가할 수 있다.
 - ③ 제1항에 따른 고령친화도 평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- 제8조(기초조사 등)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정책을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할 수 있다.
- 제9조(생활환경 편의증진) 시장은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

-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.
- 1. 여가생활을 위한 문화시설 확충
- 2. 고령친화적 설계를 적용한 주택개량지원 등 주거환경 개선
- 3. 안전한 이동을 위한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 개선
- 4. 교통약자 배려환경 조성
- 5.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
- 제10조(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) 시장은 노인관련 시설 확충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.
 - 1. 노인주거·의료·여가·재가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
 - 2. 노인일자리 지원 기관의 확충 및 운영 지원
 - 3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제11조(사회활동 참여) 시장은 노인이 사회·문화 활동 참여를 통하여 활기찬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.
 - 1. 노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및 동아리 운영 등
 - 2. 노인 참여 문화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
 - 3. 평생교육 및 정보화교육 등 재교육 프로그램 지원
 - 4. 그 밖에 노인의 사회·문화 활동 참여에 필요한 사항
- 제12조(권익 보호 및 세대 간 이해증진) 시장은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, 가족과 세대 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.

- 1. 노인 상담기능 확대 및 노인 권익 보호 강화
- 2. 세대 간 소통과 이해증진 프로그램 운영
- 3. 노인에 대한 존경. 배려 등 공동체 문화 조성
- 4. 그 밖에 노인의 권익 보호 및 가족과 세대 간 이해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13조(홀로 사는 노인의 보호)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에게 방문요양 등의 서비스 제공과 안전 확인 등의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다.
- 제14조(고용촉진 및 직업안정) 시장은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생산적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.
 - 1. 노인 일자리의 개발과 보급 및 노인의 직업재활과 교육훈련
 - 2. 노인 일자리 현황 조사와 일자리 확대방안 연구
 - 3.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·운영
 - 4. 그 밖에 노인의 생산적 노후생활에 필요한 사항
- 제15조(건강증진) 시장은 노인의 심신 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노인 건강증진, 재가노인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 연계체계 구축, 노인성질환 예방 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- 제16조 (영양건강 사업) 시장은 노인의 안정적인 식사 및 영양건강관리 등을 위해 노인 영양 건강 상담 ·교육과 노인 식사 지원을 위한 연계 체계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- 제17조(교육 및 홍보) 시장은 시민이 인구의 고령화 실태와 대응 시책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교육·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.

- 제18조(위탁)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추진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조부터 제17조까지에 해당하는 사무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게 위탁 할 수 있다.
- 제19조(위원회 설치 및 기능) ①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자문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 -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·자문한다.
 - 1.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
 - 2. 고령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연구, 인력 양성 및 인프라 구축
 - 3. 고령친화도시 추진 관련 사항
 - 4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제20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-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 - ③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고령친화도시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 - 1.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
 - 2. 노인복지 관련 시설 종사자
 - 3. 노인복지분야 또는 고령친화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 -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

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.

- ⑤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노인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.
- 제21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 -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- 제22조(위원의 해촉)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.
 - 1. 위원이 장기 치료 또는 장기 해외 거주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 - 2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
 - 3.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여 이득을 취한 경우
 - 4.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
 - 5. 위원이 제2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
- 제23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된다.

- 1.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
- 2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- 3.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, 진술, 자문, 연구,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
-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 및 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,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-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
- 제24조(위원장의 임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 -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25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 -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.
 -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제26조(수당)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

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27조(운영세칙) 이 조례의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1. 재정수반 요인

- 가. 자치법규안명
 - 남양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
- 나. 재정 수반 요인
 - 제7조(고령친화도 평가 등) ~ 제18조(위탁)
 - 제26조(수당)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2항제2호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,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○ 의안이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포괄적이고, 권고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, 현재 추진계획 등 구체적으로 정해진 사항이 없어 기술적으로 비용의 추계가 어려움.

4. 작성자

복지국 노인복지과장 한혜정

붙 임 관계법령 발췌서

□ 「노인복지법」

- 제2조(기본이념) ①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.
 - ②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 받는다.
 - ③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4조(보건복지증진의 책임)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,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 -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□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

- 제11조(고용과 소득보장)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최대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.
 -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금제도 등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고 노인에 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민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
- 제12조(건강증진과 의료제공)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・연령별 건강상의 특성과 주요 건강위험요인을 고려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 -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을 위한 의료·요양 제도 등을 확립·발전시키고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13조(생활환경과 안전보장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생활에 필요한 기능과 설비를 갖춘 주거와 이용시설을 마련하고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쾌적한 노후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재해와 범죄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- 제14조(여가·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)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의 여가 와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.
 -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 등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.
- 제15조(평생교육과 정보화)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세대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, 이를 위한 교육시설의 설치·인력의 양성 및 프로그램의 개발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 -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세대간 정보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보화 교육, 프로그램 개발 및 장비 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- 제15조의2(노후설계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설계하기 위하여 재무, 건강, 여가, 사회참여 등 각 분야에서 적절한 상담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- 제16조(취약계층노인 등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을 수립·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노인·장애노인 등 취약계층의 노인에 대하여 특별한 배려를 하고 도시·농어촌지역간 격차 등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여야 한다.
- 제17조(가족관계와 세대간 이해증진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효행을 장려함으로써 노인이 가정과 사회에서 공경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세대간 교류의 활성화와 세대간 이해를 증진함으로써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가 형성되도록 필요한 사회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.
- 제18조(경제와 산업 등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경제· 산업구조 및 노동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는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제19조(고령친화적 산업의 육성)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상품 및 서비스 수요의 변화에 대비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.
 -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에게 필요한 용구와 용품 등의 연구개발·생산 및 보급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- 제29조(조사 및 연구)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여야 한다.
-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기관을 설치하거나 연구소·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.
- 제31조(국제교류의 활성화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와 관련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참여하고, 정보교환 및 공동조사연구 등 국제 협력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국제교류를 활성화하여야 한다.